

#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37
----------	------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중구 청장

##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나. 위원의 임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제7조)
-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회의의 개최, 진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마. 안전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바.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사.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근거법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 : 2013. 8. 26. ~ 2013. 9. 16.(의견 없었음)

#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 업무담당 국장, 산사태 업무담당 부서장, 재난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다. 관할 지역의 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에 필요한 사항, 심의안건 작성, 상정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제11조(안전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3. 안전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제162회-본회의제2차부록)

4. 안전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위원 발언요지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전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전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심사보고서

## (의안번호 1037)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11. 12.(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3. 11. 15.(금)
- 위원회심사 : 2013. 11. 29.(금)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위원의 임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회의의 개최, 진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4.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석기)

#### ○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